

자동차기업 생산 · 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FAQ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2026.09.01.)]

1

지원자격 관련

Q1.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A.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이며, 2026년 11월 30일 이내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동차 관련 업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공장등록증상 업종코드 혹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업종코드 확인[별첨1-대상업종 분류코드 확인]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납품 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산업 분류 코드가 일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해당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첨2-자동차업종 인정 기준]에 **인정기준별 증빙자료에 따라 대상 업종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업종 분류코드 확인이 어려워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접수처로 사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3.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규 채용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 A. 네, 사전공고일(3.26)로부터 본 공고 마감일까지 **신규채용 실적**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재직 중 인원) 신청이 가능하며,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약정을 통해 조건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규채용 인원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신규채용 1명당 최대 5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5. 채용 약정 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조건부 선정 기업의 경우 과제 종료일(11.30) 이전 **채용 실적(고용보험 가입자)**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6.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이 인정되나요?

- A.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도 신규 채용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 A.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채용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중복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본 사업의 신규 채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이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또는 고용장려금, 기업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채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채용 인원에 대한 기업지원금 수령을 포기하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용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8. 추진계획서의 '채용실적', '채용계획', KPI의 '신규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작성기준
[1.기본현황]-자격요건	채용실적보유	인정되는 신규채용 인원 * 3.26 이후 내국인 채용자 중 제출일 기준 재직인원(타 지원사업 채용인원 제외)
[1.기본현황]-자격요건	채용계획보유	채용기한(11.30) 내 추가 채용 예정인원
[4.성과목표(KPI)]-성과지표	신규채용-현재수준	채용실적과 동일
[4.성과목표(KPI)]-성과지표	신규채용-목표	사업 종료 시점(정산시점)까지 신규채용 또는 고용유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인원 (최소 1명 이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
(ex) 5백만원 지원 신청) 채용실적 0명, 채용계획 1명, KPI 현재수준 0명, KPI 목표수준 1명 이상 자율 설정 1천만원 지원 신청) 채용실적 1명, 채용계획 1명, KPI 현재수준 1명, KPI 목표수준 2명 이상 자율 설정		

Q9. 타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환경개선 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동일한 개선 항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개선 내용과 지원 대상이 명확히 다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휴게실·화장실 등을 개선한 기업이 본 사업에는 생산환경개선(안전시설, 생산설비 개보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및 비용

Q10.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채용 1명당 생산·근로환경 개선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1,000만원입니다.(2명 초과 시에도 최대 1,000만원)

· 신규채용 1명 : 최대 500만원 / 신규채용 2명 이상 : 최대 1,000만원

예) 신규채용 1명 + 개선비용 625만원 → 지원금 최대 500만원 / 기업부담 125만원

예) 신규채용 2명 + 개선비용 1,250만원 → 지원금 최대 1,000만원 / 기업부담 250만원

예) 신규채용 2명 + 개선비용 2,000만원 → 지원금 최대 1,000만원 / 기업부담 1,000만원

※ 총 개선비용의 20% 이상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Q11. 기업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초과 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Q12. 견적서는 몇 부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선 항목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수행기관에서 추가 견적서 또는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3. 선정 후 개선 내용이나 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선정 이후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주요 개선 항목 또는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14.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1개 기업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가능 항목

Q15.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

A. 안전시설, 노후설비 개선, 자동화 장비 개보수, 근로환경 및 복지시설 개선 등 생산 및 근로환경 개선 관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Q16. 기업이 직접 시공하거나 자체 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외부 업체를 통한 계약 및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체 시공이나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7. 냉난방기, 컴퓨터 등도 지원되나요?

A. 냉난방기 신규 구매, 컴퓨터 등 자산성으로 인정되는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냉난방 설비의 개보수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18. 일부만 개선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장 내 일부 공간 또는 공정 개선도 신청 가능합니다.

Q19. 설비나 장비 구매도 가능한가요?

A. 단순 구매 형태의 자산성 장비는 지원이 제외되며, 기존 설비의 개보수 및 기능 개선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시설에 고정되는 공사 및 기존 설비의 개선은 지원 가능하나, 단독 사용이 가능한 장비·기기·가구 등은 자산성으로 판단되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성 여부 판단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성으로 판단되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장비 및 기기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이동·재설치가 가능한 물품
- 생산 설비 또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장비
- 사무용 물품(컴퓨터, 책상, 의자 등), 공구(공구함, 작업대, 장비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산성으로 인정 가능

- 시설에 고정되어 구조적으로 설치되는 공사
- 기존 설비의 보수·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작업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공사(바닥, 벽면, 환기, 방음 등)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개보수(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 자산성 여부는 사업 목적, 설치 형태 및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함

Q20. 여러 개선항목을 묶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생산환경, 안전시설, 근로환경 등 여러 개선항목을 하나의 과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개선항목의 필요성, 사업비 및 개선내용이 추진계획서와 견적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Q21.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선정 및 협약 이전에 환경개선을 이미 진행한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협약 체결 및 수행기관 안내 이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과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Q22. 임대 공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가능하나, 건물주 또는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Q23. 시설이 양호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환경 개선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현장실사과정에서 선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4. 지원 가능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계약, 구매,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및 평가 관련

Q25. 몇 개 기업이 선정되나요?

A. 추가모집 건으로, 예산범위 내 기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Q26.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고용창출, 기업역량, 개선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일자리창출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기업을 선발합니다.[공고문 내 평가기준(안) 참조]

Q27. 현장평가는 무엇을 보나요?

A. 서면평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채용 이행 의지, 개선 대상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개선 예정 장소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인터뷰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검증합니다.

6

절차 및 일정

Q28.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 14시까지 이메일 접수입니다.

Q29.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본 사업은 기업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정 이후 수행한 개선활동에 대해 기업이 비용을 선지출한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채용약정 이행이 확인되면 사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산 시에는 결과보고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사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지역혁신프로젝트팀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 홈페이지 : www.gsmba.kr
- 담당자 연락처 : (Tel) 031-8064-1086 / (E-mail) hy0425@gsmba.kr

※ 본 FAQ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세부 사항은 공고문 및 관련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첨1] 자동차산업 인정 분류코드

★ 자동차 부품 제조·납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관련 산업분류코드 일치 시 사업 참여 가능

유형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내연차 전용- 동력발생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전기·수소전용- 전기구동- 전기에너지저장- 전력제어변환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4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수소전용- 연료전지스택- 수소저장공급- 공기공급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유형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내연차 · 미래차 공용	내·외장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열관리-엔진배터리연료전지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동력전달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조향현가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제동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전기장치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유형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코드	산업명(세세분류)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기타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별첨2] 자동차업종 인정 기준

인정 기준	증빙자료(안)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기업	• 제품 카탈로그/제품 브로슈어 • 회사 홈페이지(캡처),제품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자동차부품제조 포함)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 실적 보유 기업	[최근3년 내('23~현재)실적] • 최근 3년 내 자동차1차벤더 또는OEM납품 거래명세표 (현대모비스,만도, HL클레무브 등Tier1업체) •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납품서 • 납품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부품개발 협력 계약 • 납품승인서,부품 승인서(PPAP승인)
자동차 품질 인증 보유 기업	[유효기간 내] • IATF16949(자동차 부품Scope) • SQ인증(현대.기아) • GM / Ford / Stellantis인증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유효기간 내] • KC자동차 부품 인증 •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뿌리기업 / 자동차 부품기업 인증 등